2014년 1월 1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월16일(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www.smba.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성장 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동반성장지원과장 이대건(042-481-4464), 사무관 편장범(3979)

불공정거래행위, 이제 그만
– 중기청, 의무고발요청 제도 본격 시행('14.1.17)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금번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본격 시행**('14.1.17부터)한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제도이다.

○ 그간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이 저조(1.4%수준)***하여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중기청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 공정위 최근 5년간('08~'12) 조치실적 12,966건 중 177건 고발 : 고발율 1.4%

** 고발요청 기관 : (종전)검찰청 → **(추가)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이상 시행일 '14.1.17), 가맹사업법(시행일 2.14) **5개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 그간,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 업무협약에 따라 **사건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제도의 운영·발전을 위해 **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의무고발요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 중기청이 당해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검토**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별도의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하게 된다.

* 주요 기준 :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위법행위 기간, 직원 감소 수준, 가해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의존도, 피해기업 수 등

○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향후,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금년에 처음 도입된 만큼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속 추진**하면서

○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지원과 편장범 사무관(☎ 042-481-397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의무고발요청권

□ 제도 개요

○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경우,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

* 제18대 대선 당시 후보자들은 강력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경제민주화의 핵심사항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

□ 도입 배경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소극적 전속고발권* 행사에 따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절 미흡 지적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

** 공정위 최근 5년간('08~'12) 조치실적 12,966건 중 177건 고발 : 고발율 1.4%

□ 의무고발요청권 부여 현황

구 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일		'14.1.17	'14.1.17	'14.1.17	'14.2.14
주요내용	해당조문	제32조(고발)	제71조(고발)	제42조(고발)	제44조(고발)
	고발권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공정위
	고발 요청권	(기존)검찰 (추가)감사원, 중기청	(기존)검찰 (추가)감사원, 중기청, 조달청	(기존)검찰 (추가)감사원, 중기청	(기존)검찰 (추가)감사원, 중기청
	고발대상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	사회적 파급효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제3항)의 경우 공정거래법을 준용(제제71조)하여 의무고발요청 가능

참고 2 의무고발요청 제도 관련 관계부처 업무협약

□ 협약 개요

○ 공정거래 관련 법령 개정('13.6)으로 도입된 고발요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정위와 고발요청기관간 협력 범위와 절차 규정

* MOU 구성 : 총 3장(본문 8조), 부칙 2조로 구성

** 체결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조달청, 체결일시: '13.12.10

□ 협약 주요내용

① 고발요청 등에 있어서 **각 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고 이 협약에 따라 **적극 협력**한다는 기본원칙을 규정(제2조)

② 조달청 및 중기청이 공정거래 위반사건의 조치결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사건처리결과 통지의무**를 부여(제3조)

- 중기청에는 공정거래법 등 5개 법률 위반사건, 조달청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과 관련된 담합사건을 각각 통지하게 됨

③ 조달청 및 중기청은 원칙적으로 공정위로부터 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제4조)

④ 조달청 및 중기청은 고발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음(제5조)

- 공정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정거래법 제62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함

⑤ 공정위는 고발요청을 받은 경우 **검찰총장에게 즉시 고발**함(제6조)

⑥ 고발요청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상시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해 **3개 기관 협의체**를 설치·운영(제7조 및 제8조)

- 협의체는 각 기관의 부기관장*으로 구성하며, 협의체는 협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공정위 부위원장, 조달청 차장 및 중기청 차장 (간사는 공정위 경쟁정책국장)